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40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12월 19일
제안자 : 교통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정류소 명칭을 승강장이 아닌 승차대에 표기하는 현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“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”이란 용어의 뜻을 “버스정류소의 표지판, 승강장, 노선안내도 및 차내 안내방송 등에 해당 정류소의 주된 명칭 또는 부가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”에서
- “버스정류소의 표지판, 승차대, 노선안내도 및 차내 안내방송 등에 해당 정류소의 주된 명칭 또는 부가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”으로 수정함

2. 주요골자

- “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”이란 용어의 뜻을 “버스정류소의 표지판, 승차대, 노선안내도 및 차내 안내방송 등에 해당 정류소의 주된 명칭 또는 부가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”으로 수정함(안 제2조제5호)

- 시내버스정류소의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
이 따로 정하도록 함(안 제8조의2제3항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”이란 사용료를 내고 시내버스정류소의 표지판, 승차대, 노선안내도 및 차내 안내방송 등에 해당 정류소의 주된 명칭 또는 부가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
제8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내버스정류소의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서울시장 제출안	수정안(위원회안)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정류소와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<u>관리</u>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관리, 시</u> <u>내버스정류소 명칭</u> <u>사용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제1조(목적)<시장 제출안과 같음>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“<u>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</u>”이란 <u>사용료를 내고 시내버스정류소의 표지판, 승강장, 노선안내도 및 차내 안내방송 등에 해당 정류소의 주된 명칭 또는 부가적인 명칭을 사용</u>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“<u>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</u>”이란 <u>사용료를 내고 시내버스정류소의 표지판, 승차대, 노선안내도 및 차내 안내방송 등에 해당 정류소의 주된 명칭 또는 부가적인 명칭을 사용</u></p>

현행	서울시장 제출안	수정안(위원회안)
<p><u><신설></u></p>	<p><u>하는 것을 말한다.</u> <u>제8조의2(정류소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)</u> <u>① 시장은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사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</u> <u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수입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시내버스정류소의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	<p><u>하는 것을 말한다.</u> <u>제8조의2(정류소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)</u> <u>①<시장 제출안과 같음></u> <u>②<시장 제출안과 같음></u> <u>③ 시내버스정류소의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관리”를 “관리,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”으로 한다.

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”이란 사용료를 내고 시내버스정류소의 표지판, 승차대, 노선안내도 및 차내 안내방송 등에 해당 정류소의 주된 명칭 또는 부가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조의2(정류소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) ① 시장은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수입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 - ③ 시내버스정류소의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와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<u>관리</u>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관리,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“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”이란</u> <u>사용료를 내고 시내버스정류소의 표지판, 승차대, 노선안내도 및 차내 안내방송 등에 해당 정류소의 주된 명칭 또는 부가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제8조의2(정류소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) ① <u>시장은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수입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시내버스정류소의 명칭 사용 및</u></p>

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
이 따로 정한다.